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의안번호	제484호
의결년월일	2001. 6. 15 (제87회)

제출년월일 : 2001. 6. 8

제출자 :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1. 그 동안의 추진결과

가. GBT특위 구성 개요

○ GBT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

- 의결일시 : 2000. 12. 23(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주요내용

- 구성인원 : 9명(홍인석, 남재우, 류중혁, 이강인, 한기천, 우재극, 김종화, 김부희, 박병화 의원)
※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 활동기간 : 2001. 1. 1~2001. 6. 30(6개월 간)

○ GBT특위 활동 계획안 의결

- 의결일시 : 2001. 1. 19(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중점사항 및 활동계획 확정
- 사업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
- 현장확인, 토론회·공청회 개최, 시민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 초청 의견청취 및 질의

나. 회의개최현황

○ 제1차 회의 : 2001. 1. 3(수)

• 주요내용

- 위원장, 간사 선임(위원장 : 홍인석 의원, 간사 : 김부희 의원)

○ 제2차 회의 : 2001. 1. 16(월)

• 주요내용

-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 제3차 회의 : 2001. 2. 9(금)

• 주요내용

-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

- 제4차 회의시 출석요구자의 범위 결정

※ 경기도 교류협력과 배회동 전문위원,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 김용환 국제변호사

○ 제4차 회의 : 2001. 2. 19(월)

• 주요내용

- 외자유치 기본계약 관련 국제변호사 및 경기도 관련공무원 초청 추진사항 설명 및 의견청취
※ 경기도청 관련공무원 불참으로 김용환 국제변호사의 추진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

○ 제5차 회의 : 2001. 3. 5(월)

• 주요내용

- 외자유치 기본계약 관련 경기도청 관련공무원 초청 의견청취 및 토론

○ 제6차 회의 : 2001. 5. 4(금)

• 주요내용

- GBT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한 경기도 Task Force 구성원과의 간담내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 제7차 회의 : 2001. 5. 30(수)

• 주요내용

-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결

다. 주요 추진사항

○ 현장방문 실시(2회)

- 일 시 : 2001. 3. 22(목), 5. 30(수)
- 장 소 : 파주시(3. 22), 유성구 음식물쓰레기 힘기성 처리시설(5. 3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5. 30)
- 참 석 : 13명(특위위원, 관련 공무원)
- 방문내용

-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힘기성시설과 유사한 파주시 및 유성구 힘기성 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공정 및 음식물 수거체계, 이물질처리, 시설의 특징, 기술적 겹증 등에 대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짐
- 한국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힘기성의 전문가인 박순철 박사와의 브리핑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짐

2. 활동기간 연장

가. 주 문

-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1. 1. 1~2001. 6. 30에서 2001. 1. 1~2001. 12. 31로 연장한다.

나. 제안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의 기본설계 지연으로 본 시설사업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간 우리 특위에서 제시한 문제점 등이 수정계약서에 미 반영되었으며 또한 도로·교통문제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

여 2001. 12.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GBT특위 활동사항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약서 10조1항 계약서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실행계약 체결시까지 반영하여 의회승인 후 사업시행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약서 10조2항 음식물쓰레기 물량보증에 대하여 부천시의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GBT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별도로 물량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계약서에 삽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약서 10조3항 전용도로 공사비용 확보에 있어서 경기도가 책임지고 관리공사는 부천시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자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도에서는 수용했으며, 따라서 전용도로 개설공사비 확보의 주체가 경기도이므로, 기본계약서 10조3항 영문본과 국문본의 내용이 다른 것 수정요망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하는 시스템으로우리 부천시에서는 매리트가 있었음. 하지만 현재 설계 진행 중인 방식은 하수분리방식으로 알고 있는 바 분리방식은 매리트가 없으므로 사실확인 요망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화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대상은 GB 내에는 부지 5,000m'이상으로 만약 신규부지를 추가 매입할 경우 환경성 검토대상이므로 주지 요망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의 연장이 3km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기준 및 실시설계시 반영되도록 검토 요망 	추진 중	

<p>○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1일 15톤 중 20%가 이물질인 바 만약 부천시에 2천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이물질이 15%로 볼 때 300톤으로 이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부실행계약 체결시 적극 논의 요망</p>	추진 중	
<p>○ 진입로 차량정체문제, 하수슬러지, 침출수 처리문제 등 행정적 및 기본 실시설계 후 세부실행계약 체결시 논의요망</p>	추진 중	
<p>○ 우리 나라 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장 유입수 BOD 설계기준치 150PPM이므로 하수유입 기준치를 넘는 음식물쓰레기 다양 유입시의 BOD 유지대책</p>	추진 중	
<p>○ 우리 부천시의 경우 반효조의 용량이 250톤으로서 음식물선별에 의한 250톤이 발효조에서 발효가 가능한지 기술적 검증</p>	추진 중	
<p>○ 장기적으로 퇴비를 농토에 사용하면 염분으로 인해 피해를 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구결과나 기술적 검증문제는?</p>	추진 중	